

올바른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를 위한 기록관리 ·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

2018.5.

행 정 국 (정보공개정책과)

목 차

1.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

- 기록생산시스템 ~~~~~ 2
- 비전자문서 등록과 접수 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 3
- 기록관리, 자주 묻는 질문 ……………… 4

2.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처리

- 결재문서 작성방법 총정리 ······· 5

3. 정보공개 실무처리능력 향상

—	$\stackrel{\wedge}{\bowtie}$	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	6
-	1	사용자 신청(최초 접속 시)	7
-	2	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 결정	8
-	3	다중처리 부서지정인 경우	10
-	4	부존재 결정	11
-	5	진정·질의 민원 처리	11
-	6	타기관 이송	12
-	7	기간연장	12
-	8	입력내용 수정	13
_	9	정보공개 관련 문의	13
-		이것만은 반드시!! 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14

1. 기록관리 원칙에 맞춘 기록의 생산관리

전자문서 작성

기안기 - 문서정보입력

결재정보 본문	공람	안(案)추가 안(案)삭제
🖸 문서정보		□ агшонетог □ в инолорга
★ 제목		문서제목
* 과제카드		모나이 웹사내오이 모아이가 에서하스 이트로 신게 서거
문서취지		• 문서의 핵심대용이 무엇인지 예정할 두 있도록 쉽게 실정 • 목록은 공개하는 것이 기본이므로 제목에 개인정보 등의 비공개사항 제외
◆ 공개여복(시민)	 ・ 대시민공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•동일·반복적인 민원회신으로 문서의 식별이 필요한 경우, 수신자를 별도의
 열람범위(내부) 	 기관 부서 	관리번호로 표시하거나 성명의 일부를 (*)로 표시 하는 등 조치
* 열람제한(보안)	○ 설정안함 ○ 글	. 예시)징계처분결과(최**), 민원처리결과회신(00구 00동4-5-164, 000귀하)
◙ 결제경로		· 결제경로지정
순번 처리방법	직위(직급)	
1 기안	주무관	단위과제카드 선택
D 시행정보		• 다이과제 하이에 과려기로은 브르하느 다이
수신자	내부결재	전기되게 아카에 인인가득을 분유하는 신기
3유		•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이 하위의 단위과제카드에 그대로 적용되므로
기관명	서울특별시	단위과제카드 선택에 따라 문서의 보존기간이 결정
시행증류	내부결재	• 단위과제카드 선택 시 동일한 사안의 기록물끼리 모이도록 분류
🖸 관련정보		전면상모시상 소기와



Ⅰ• 야판 • 뫼 │ 2018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

전자문서 작성

기안기 - 문서정보입력

		공개여부(시민)	공개여부(시민)		
결재정보 본문	공람	• 시민에 대한 공개여부를 생산 시에 설정하는 것			
· 제목		· 공개가 원칙이며,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해당 시 가능			
• 과제카또		• 부분공개, 비공개 선택 시 공개제한 상세사유를 20자 이상 기재			
문서취지		※ 띄어쓰기(스페이스 바), ""등 불성실한 비공개사유 기재 금지			
● 대시민공개 ○ 부분공개 ○ 비공 - 공개여부(시민) 개인정보나 내부 혐의(진행)증인 문건이		● 증개, 무군공개 군서는 나름일 정보소동광장을 통해 원군공개 ○ ^{부분공개} ○ 비공 부협의(진행)증인 문간이 공개될 경우 관련법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 • 열람범위(내부) ● 기관 ● 부서 전직원 열람으로 		부서 전직원 열람으로 내부직원을 통한 정보유출이 가능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
 • 열람제한(보안) ○ 설정안함 ○ 결재중 		○ 결자중 ○ 제한중료일 🔤 😬 영구 앱바고 문서인 경우 제한중료일 지정			
2 결재경로		열람범위(내부), 열람제한(보안)			
순변 처리방법 적위(적급) 1 기안 주무관 시행정보 · 기관 내에서의 수신자 내부물재 경유 · 열람에 가능함 기관명 // 서울특별시		 · 기관 내에서의 열람여부 설정 : 기관-전부서, 부서 - 해당부서 · 공개구분은 시민에 대한 공개여부이므로 비공개문서도 내부열람 가능 · 열람제한(보안)은 결재선상의 사람과 해당 단위과제카드 과제담당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한 			
시행종류 내부글쳐 • 제한종료일 수 - 기자설명회 · - 기자설명회 ·		• 제한종료일 설정 시 해당기간까지 열람이 제한(최장 30년) - 기자설명회 전, 승진결과 발표 등 일정기간 공개유예가 필요한 경우			

▶ • • • • ● │ 2018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

기록생산시스템

문서본문 - 공문서 작성방식 변경 (2017.11.1시행)

- 공문서 본문의 시작은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작점을 찾기 불편
- 불필요한 여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어 문서작성 방법이 변경됨
 - 첫째 항목기호는 왼쪽 처음부터 띄어쓰기 없이 바로 시작
 - 둘째 항목부터는 상위 항목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2타씩 옮겨서 시작
 - 항목이 한줄 이상인 경우에는 항목 내용의 첫 글자에 맞추어 정렬(shift+Tab키 사용)
 - 항목기호와 그 항목의 내용 사이에는 1타를 띄움
 - 하나의 항목만 있는 경우에는 항목기호를 부여하지 않음

개선 전	개선 후
수신 서울특별시장 (경유) 제목∨공문서의 작성방법 개선	수신 서울특별시장 (경유) 제목vv공문서의 작성방법 개선
vvvvvl.v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	1.v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

Ⅰ• 야판 ㆍ ┃ 2018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



기타 유의사항

전자문서 붙임파일 첨부 시 암호설정 금지

붙임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할 경우 해당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, 다른 사람이 업무에 참고하고자 할 때 붙임 파일을 열어볼 수 없는 경우 발생 (필요한 경우 열람제한 기능 사용)

압축파일(zip, alzip 등)은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파일수와 실제파일수가 상이한 문제 발생

압축파일을 첨부할 경우 시스템은 1개의 파일이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된 것으로 관리되지만, 해당 압축파일 을 해제할 경우 다수의 파일이 발생

전자문서의 붙임으로 실제파일이 아닌 연결정보(링크) 기재 금지

연결정보(링크주소 등)가 열리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거나 링크한 정보가 변경되는 등 기록의 무결성 훼손의 우려가 있음

Ⅰ· 야판· 뫼 │ 2018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

※ 행정 협업과 효율촉진에 관한 규정 제67조(문서 미등록자 등에 대한 조치)			
	비전자문서 등록	비전자문서 접수	
내용	전자문서 작성·결재가 원칙이나, 부득이하 게 종이문서로 결재받은 문서를 <mark>결재 완료 후 등록</mark>	민원인, 외부기관 및 단체 등에서 제출한 문 서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신한 문서의 접 수	
절차	문서등록대장의 "비전자문서등록" 결재완료 후 업무담당자가 직접 등록 종이문서 스캔본을 함께 등록 종이문서 원본 잘 보관하여 분실 주의	(업무담당자)접수한 종이문서를 스캔하여 부서담당자에게 전달 (부서담당자)접수처리 → 업무담당자 배부	
보관 방법	문서등록대장에서 부여한 생산(접수)등록번호를 문서에 표기 ※ 생산문서는 좌측상단여백, 접수문서는 우측상단여백 등록(접수) 시 선택한 단위과제카드과 동일한 종이기록물 생성 등록(접수)이 완료된 문서를 동일한 이름의 종이기록물철에 보관		

결재받은 문서를 등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됨

비전자문서 등록과 접수

Ⅰ• 야판 • 비 2018 기록관리 정보공개 실무자 교육

- 보존기간이 3년으로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
- "일반업무관리"는 일회성업무, 타 기관의 단순 홍보성문서 (지역축제홍보 등) 등을 편철하는 카드

마땅한 카드가 없는데…"일반업무관리"에 넣을까요?

- 과제관리 > 부서과제를 살펴보고 필요한 카드에 과제담당자로 추가
- 과제관리 > 나의과제를 확인해서 해당카드가 없다면

문서를 기안하는데 단위과제카드가 안보여요.

- 업무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단위과제 신설 절차를 따름
- 다른 부서에서 업무와 함께 발령이 난 경우라면, 기존 부서의 단위과제-카드를 인계인수
- 기존의 단위과제-카드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
- # 새로 발령받았으니 단위과제카드 만들어주세요!!

기록 오분류 사례

기록관리, 자주 묻는 질문



이런 기록은 보존기간이 몇 년이예요?

기록물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아요.

현재 보존기간이 몇 년으로 책정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업무관리시스템에서 "단위과제"의 보존기간을 살펴보세요.



※ 내용 식별이 힘들 정도로 많이 가리거나, 제한종료일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공개 선택
 → 단, 비공개 선택 시 정보공개정책과(정보소통혁신팀장) 협조결재 추가(국장급 이상일 경우)

⊮ 야 ♥ ↓ 2018 정보공개 집합교육

결재문서 공개

베스트 · 워스트 기관 선정기준 개선

서울 정보소통광장 opengov.seoul.go.kr

기존(2016.6. ~ 2018.2.)	ŀ.	개선(2018.3. ~)
^{추진목표} 공개율 향상 문서작성 후 관리(사후 모니터링, 개선권고)		^{추진목표} 정확한 생산 문서작성 시 관리(사전 검토 및 안내)
· 비공개문서 수동 모니터링 · 개선가능 문서 기안자에게 이메일 안내	관리방법	· 비공개문서 결재선 자동 모니터링 · 정보공개정책과(정보소통혁신팀장) <mark>협조결재</mark> 없는 비공개문서 기안자에게 이메일 안내
· 공개/부분공개/비공개 문서 건수 · 비공개문서 중 개선가능문서 건수	주요지표	· 공개/부분공개 문서 건수 · 비공개문서 중 <mark>사전검토 준수 건</mark> 수
· 베스트 : 공개율 상위 5개 기관 · 워스트 : 공개율 80% 미만이면서 개선가능비율 20% 초과 기관	선정기준	ㆍ 베스트 : <mark>공개율+사전검토준수율</mark> 상위 5개 기관 ㆍ 워스트 : 공개율+사전검토준수율 80% 미만 기관
매월	선정주기	격월

※ 사전검토준수 근거 :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('17.7.27. 개정)

3. 정보공개 실무처리능력 향상

☆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

정보공개시스템 <u>http://admin.open.go.kr</u> 접속(행정포털>업무데스크>'행정' 분류 선택) ■



T

"내가처리할 업무" 또는 "청구관리>부서청구 관리"에서 청구내용 확인



 ★ 정보공개시스템 공개자료(첨부문서) 등록방법
 ○ 수수료 없는 경우: 결정통지서 작성시 공개자료(첨부문서) 등록 → 결정통지서 내부결재→ 결정통지서 교부
 ○ 수수료 있는 경우: 결정통지서 내부결재 → 결정통지서 교부 → <u>수수료 납부확인</u>→ <u>공개자료(첨부문서) 등록 및</u> <u>청구인에게 공개 실시</u>

① 사용자 신청(최초 접속 시)

① 정보공개시스템(http://admin.open.go.kr)에서 사용자 신청 후 공인인증서 등록 → 행정포털 > 정보공유 > 업무매뉴얼 > 정보공개도우미 > 16번글 참조

② 사용자 신청 등록 시 (승인⇔정보공개정책과 : ☎ 2133-5697, 5681)

- "기관명"은 <u>서울특별시</u>, "부서명"은 <u>과 단위 부서</u>까지 선택
- "전자문서시스템 연계아이디"는 "행정포털 아이디" 입력

◆ 부서이동시 개인정보 수정방법
 - 우측상단 '사용자정보관리' ➡ 수정 ➡ 부서명 조회 후 선택 ➡ 저장

★ 인증서 등록시 아이디,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 / 부서관리자 변경시

◈ 정보공개정책과로 유선으로 확인요청 (☎2133-5679~5681, 5697)

★ 은행인증서로도 가입 가능 - 다만 은행인증서의 경우 접속 주소가 상이함

- ◈ 인증서별 정보공개시스템 접속 주소 (인증서도 해당사이트에서 등록)
 - GPKI(행정전자서명) : http://admin.open.go.kr
 - NPKI(은행인증서) : http://iadmin.open.go.kr
- ★ 부서총괄이 해당 사용자를 검색할 수 없는 경우

 자치구 및 타기관 전입자는 새로이 사용자 신청 후 등록을 해야 하며, 기존 사용자 중 소속부서가 이전 부서로 되어있는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'사용자정보관리'에서 직접 부서를 수정해야 함

★ 문자알람을 받고 싶을 경우

| ◈ 정보공개시스템 '사용자정보관리'에서 SMS수신여부를 '예'로 설정

② 공개, 부분공개, 비공개 결정

청구관리 ➡ 부서청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결정 클릭 ➡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➡ 자동결재 ➡ 업무관리시스템(행정정보연계) 내부결재 ➡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통지 ➡ 수수료 납부 확인 ➡ 공개자료(첨부 문서)등록 및 '청구인에게 공개'실시

◈ 시스템 매뉴얼 : 행정포털 〉 정보공유 〉 업무매뉴얼 〉 정보공개도우미 게시판

※ 공개·부분공개 결정 시,

● <u>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 작성 시 공개자료 등록</u>

① 결정통지서 작성 시 주의사항

- 비공개 결정 시 법적근거 및 사유 자세히 작성(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 참조)
 → 행정포털 > 정보공유 > 업무매뉴얼 > 정보공개도우미 > 4번글 참조
- 비공개 결정은 실, 본부, 국장 결재사항(사업소는 기관장)
- 공개형태, 수령방법 등은 청구 내용에 따라 입력
- 공개일시, 수수료 및 납부기한(공개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) 입력
- 수수료 입금계좌 : 우리은행 1006-300-189776, 서울특별시
- ◈ 수수료 : 정보공개수수료 + 등기우편 요금
- ◈ 수수료 산정 기준 :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참조

◈ 등기우편 우송료는 문서실(☎2133-7942)로 문의

② 결재 시 주의사항

- 자동결재를 눌렀음에도 행정정보연계로 상신되지 않을 경우
 - ⑦ "사용자정보관리-전자문서시스템 연계아이디"에 "행정포털 아이디" 입력
 ④ 첨부파일의 용량 확인 : 용량이 7MB 이상일 경우 자동연계 불가
 - ① 첨부파일명 확인 : 첨부파일명에 특수문자가 있을 경우 자동연계 불가
- 자동결재를 할 수 없을 경우 : 수동결재
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내부결재 후 수동입력(기안자, 결재자, 문서번호)

- ③ 결정통지 (※ 결재완료 후 자동 통지되지 않으므로 **직접 사이트에서 통지**)
- 결재완료 후 정보공개시스템에서 '통지' 처리
- 온라인 청구건의 경우 정보공개시스템 결정통지로 결정통지서 교부 갈음
- 오프라인(방문, 우편 등) 청구 건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
 (문서실 직인 날인 결정통지서 지참 후 방문 / 별도 공문 불요)

④ 수수료 납부처리 (납부기한 : 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)

- 정보공개시스템 납부 : 정보공개시스템 해당 건 선택 후 '수수료 납부' 확인
- 수입증지, 계좌이체 등 오프라인 납부 : 납부 시 민원실에서 별도 고지
- ★ 수수료 미납시 : 공개일시 10일 이후까지 청구인이 수수료 미납할 경우

◆ 수수료 미납상태로 공개일시로부터 15일이 경과되면
 '통지완료→10일 초과종결'상태로 자동 변경

⑤ 공개실시

- '공개자료(첨부문서)등록' 및 공개자료 '청구인에게 공개'처리
 - ※ 수수료 납부 확인 → 공개자료 등록 → 정보공개하며, 수수료 오프라인 납부에 따른 민원실 별도 고지 건은 '수수료납부처리' 클릭 후 처리
 - ※ 추가 수수료, 과오납 등 발생시 '수수료 정산', '추가수수료 산정명세' 입력 후 청구인에게 문서로 재통보
- 공개방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 시 요청한 방법(직접방문, 우편, 팩스 전송, 정보통신망)으로 공개 실시
- [온라인 청구] 정보통신망으로 청구하고 수령방법을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확인 후 '공개자료(첨부문서) 등록' 및 '청구인에게 공개'버튼을 누르면 자동 공개됨(청구인 요청시 전자메일로 추가 발송)
- [오프라인 청구] 수령방법이 우편(팩스)인 경우 반드시 공개자료를 우편 (팩스)으로 송부
- ★ 결정 입력 후 결재중인데 처리상태를 변경할 경우

◈ 정보공개정책과에서만 처리 가능 (☎ 2133-5697, 5681)

③ 다중처리 부서지정인 경우



주관부서

- ⑦ 지원부서의 결정내용 입력이 완료되면 주관부서는 자체 결정내용 입력
 후 내부결재 후 통지
- ④ 수수료 입력 시 지원부서 수수료도 합산해 입력
- ④ 공개자료(첨부문서)가 있는 경우
 - ⑦ 통지처리 후 지원부서에 공개자료 등록하도록 안내하고,
 - 지원부서의 공개자료 등록이 완료되면 주관부서 공개자료를 등록하고,
 - ⓒ 청구인에게 공개실시

2 지원부서

- ⑦ 별도의 결재 절차 없으며, 공개 내용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받은 후
 결정등록
- ④ 공개자료(첨부문서)가 있는 경우
 - 주관부서에서 결재 받고 통지처리 한 이후에 공개자료 등록
- ◆ 지원부서에서 결정입력 또는 부존재입력을 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부서는 입력처리가 불가
- ◈ 주관부서 처리결정은 지원부서의 공개구분을 취합하여 결정
 - 주관/지원 모두 공개 → 공개
 - 주관/지원 모두 부분공개 → 부분공개
 - 주관/지원 모두 비공개 → 비공개
 - 공개 +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→ 부분공개
 - 부분공개 +비공개 → 부분공개

4 **부존재 결정**

청구관리 ➡ 부서청구 관리➡ 해당 제목 클릭 ➡ '정보부존재/진정·질의' 버튼 ➡ 정보부존재 선택 ➡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➡ 자동결재 ➡ 업무관리 시스템(행정정보연계) 내부결재(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) ➡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통지

① 결정통지서 작성 시 유의사항

- 정보부존재 처리기준 확인 후 부존재 해당여부 검토
- 부존재 사유 자세히 작성 : 부존재 결정 표준양식 참조
 → 행정포털 > 정보공유 > 업무매뉴얼 > 정보공개도우미 > 5번글 참조

② 부존재 결정시 유의사항

- 부존재 결정은 비공개와는 달리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안내하는 결정이며, 결재시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사항
 ※ 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 근거 : 서울특별시전결사무처리규칙 별표2
- 부존재는 반드시 7일 이내에 처리(민원처리법을 따름)
- 오프라인(방문, 우편 등) 청구 건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
 (문서실 직인 날인)

◈ 부존재정보와 (비)공개정보 혼합시 (비)공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고, 부존재 사항은 통지서 내에 추가 안내(처리기한은 10일 동일)

5 진정·질의 민원 처리

청구관리 ➡ 부서청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'정보부존재/진정·질의' 버튼 ➡ 진정·질의 선택 ➡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➡ 자동결재 ➡ 업무관리시스템 (행정정보연계) 내부결재 ➡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창구에서 통지

○ 진정·질의 민원처리 결정시 유의사항

- '정보공개법 제2조'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이 아닌, 진정· 질의 민원에 대한 답변하는 결정임
- 진정·질의 민원은 반드시 7일 이내에 처리(민원처리법을 따름)
- 오프라인(방문, 우편 등) 청구 건의 경우 결정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
 (문서실 직인 날인)

6 **타기관 이송**

청구관리 ➡ 부서청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'타기관 이송(타기관 동 시처리)' 클릭 ➡ 이송 대상기관 선택 및 이송사유 작성 ➡ 저장 ➡ 업무관 리시스템 전자문서 내부결재(자동연계 안됨) ➡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수동결 재 버튼 ➡ 내부결재 문서번호, 결재자 성명 등 등록 ➡ 통지 ➡ 타기관 이 송통지서 청구인에게 별도 발송(온라인 청구 시 전자통지로 갈음) ◆ 시스템 매뉴얼 : 행정포털 〉 정보공유 〉 업무매뉴얼 〉 정보공개도우미 〉 44번글 참조

- ① 청구된 정보가 타기관 소관사항에 해당할 경우 '타기관 이송' 실시
- ② 일부 정보만 이송해야할 경우 '타기관 동시처리' 기능을 이용
- ③ 내부결재시 중요한 사안은 부서장 전결, 일반적인 사안은 담당자 전결
- ④ 자동결재로 연계되지 않으므로 내부결재 후 수동결재로 처리
- ⑤ 오프라인 청구 건의 경우 기관이송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 (문서실 직인 날인)

기간연장

청구관리 ➡ 부서청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'기간연장' 클릭 ➡ 결정통지서 작성 후 저장 ➡ 부서청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'기간연장상세' 클릭 ➡ 자동결재 ➡ 업무관리시스템(행정정보연계) 내부결재 ➡ 정보공개시스템 부서청 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'기간연장상세'에서 통지 ◆ 시스템 매뉴얼 : 행정포털 〉 정보공유 〉 업무매뉴얼 〉 정보공개도우미 〉 48번글 참조

- ① 기간연장 시 유의사항
- 결정통지서 등록 후 자동결재를 통해 부서장 결재 필요
- 기간연장은 법정처리기한(10일) 내 실시(기한 경과되면 연장불가)
- 오프라인 청구 건의 경우 기간연장통지서 등기우편으로 송부
 (문서실 직인 날인)

⑧ 입력내용 수정

- ① 정보공개시스템 상 '결재'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
- 청구관리 ➡ 부서청구 관리 ➡ 해당 제목 클릭 ➡ 상세화면에서 '수정'
- ② 정보공개시스템 상 '결재'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(결재중인 경우)
- 업무관리시스템 상 결재 상신 전
- ▶ 정보공개정책과로 '처리상태 변경 요청'(☎2133-5679~5681, 5697)
- 정보공개시스템 상세화면에서 내용 수정 후 결재
- 업무관리시스템 상 결재 상신 후
 - ▶ 통지 전 ➡ 상신 문서 회수/반송 후 위 '결재상신 전' 방법대로 처리
 - ▶ 통지 후 ➡ 정보공개시스템 운영관리> '문의/처리변경요청'에 글등록

⑨ 정보공개 관련 문의

- ① 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 활용
 - 위치 : 행정포털 > 정보공유 > 업무매뉴얼 > 정보공개도우미
 - 정보공개 매뉴얼, 절차 안내, 관련 사례, 표준양식 등 확인 시 활용
- ② 기타 문의
 - 법령 및 제도 관련 :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(☎2100-3423~3425)
 - 정보공개시스템 관련 : 정보공개시스템 헬프데스크(☎1588-2572)
 - 정보공개 접수 및 부서 지정 관련 : 열린민원실(☎2133-7901)
 - 업무추진비 등 행정정보공표 관련 : 정보공개정책과(☎2133-5697)
 - 기타 정보공개청구 관련 : 정보공개정책과 (☎2133-5679~5681)
 - 결재문서 원문공개 관련 : 정보공개정책과(☎2133-5672,5673)

● 이것만은 반드시!!

-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"공개가 원칙" (정보공개법 제3조)

- 비공개는 국장(사업소는 기관장) 결재사항(부분공개 가능여부 검토)

·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의 법적근거 및 구체적 사유 자세히 작성

- 부존재는 7일 이내 결정 및 통지(정보공개지원팀장 협조)
- 10일이내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기간연장 후 통지
- 결정통지서 작성시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결정내용 상세히 작성
- 즉시공개는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를 부서장 결재 없이 담당자
 전결로 공개하는 것으로 선택시 유의
- 오프라인 청구건의 경우 통지서 등기 송부